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6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24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3.

다. 회 부 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5%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_2204859호)에 따라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란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사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지정

된 곳을 말함³⁾.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소형모듈원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 특례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둘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는 바,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등에

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_220485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란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_2204859호) 제8조(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9조에 따른 부담금

5. 에너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지원

대한 사용료 감면이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효과성이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금전 지원에 비하여 국유재산특례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_2204859)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고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⁵⁾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제12조에 따른 금융 등 지원

4. 제13조에 따른 투자 활성화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원

8. 제1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활용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지원

10. 제20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11. 제21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12. 제22조에 따른 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지원

13. 제27조에 따른 위임·위탁된 기관에 대한 지원

14.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증, 실증을 위한 원자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_2204859)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6).

6)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입주기업 등의 범위를 원전산업 관련 기업 등으로 한정하여 특례 적용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임대료를 예산으로 다시 보전해주게 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 특례 신설여부는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4859호)

제17조(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목적 달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입주 예정 기업을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2.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술 개발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매각 허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관리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 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준속기한
	219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문의처

02)6788-5150